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008호

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
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2026. 1. 8.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008호

「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-29호, 2024. 6. 21.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8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「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영·유아의 안전을 위해 고무젓꼭지와 유사한 형태 및 이용방법을 가진 고무제에 대한 기준·규격을 신설하여 영·유아용 고무제를 별도로 관리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영·유아용 고무제 규격 신설

- 1) 고무젓꼭지와 유사한 형태 및 이용방법을 가진 영·유아용 고무제를 고무젓꼭지와 동일한 기준·규격을 적용하도록 신설(안 III. 3. 및 안V. 3. 나.~다.)

3. 의견 제출

「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우편번호 : 28159, 주소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, 참조 : 첨가물기준과, 전화 043-719-2505, 팩스 043-719-250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-008

「식품위생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「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-008호, 2026. 1. 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6년 1월 8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「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

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Ⅲ. 3.(종전의 Ⅱ. 3. 다.) 중 “고무젓꼭지”를 “영·유아용 고무제”로 한다.

V.(종전의 Ⅲ.) 3. 고무제 중 나.와 다.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잔류규격

항목	규격(mg/kg)
납	100 이하 (단, 영·유아용 고무제는 10 이하)
카드뮴	100 이하 (단, 영·유아용 고무제는 10 이하)
2-머캅토이미다졸린	불검출 (염소를 함유한 고무제에 한함)
1,3-부타디엔	1 이하 (기본중합체 중 1,3-부타디엔의 함유율이 50% 이상인 고무제에 한함)

다. 용출규격

항목	규격(mg/L)
납	1 이하
총용출량	60 이하 (단, 영·유아용 고무제는 40 이하)
페놀	5 이하
포름알데히드	4 이하
아연	15 이하 (단, 영·유아용 고무제는 1 이하)
니트로사민류(N-니트로소디메틸아민, N-니트로소디에틸아민, N-니트로소디-n-프로필아민, N-니트로소디-n-부틸아민, N-니트로소피페리딘, N-니트로소피롤리딘, N-니트로소몰폴린의 합)	0.01 mg/kg 이하 (영·유아용 고무제에 한함)
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(N-니트로소디메틸아민, N-니트로소디에틸아민, N-니트로소디-n-프로필아민, N-니트로소디-n-부틸아민, N-니트로소피페리딘, N-니트로소피롤리딘, N-니트로소몰폴린의 합)	0.1 mg/kg 이하 (영·유아용 고무제에 한함)

부칙<제2026-008호, 2026. 1. 8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하는 기구 및 용기·포장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																			
< 신 설 >	<u>Ⅲ. 용도별 규격(현행 Ⅱ. 3.에서 이동)</u>																				
< 신 설 >	3. 영·유아용 고무제의 총휘발량은 0.5% 이하이어야 하며, 시험법은 IV. 2. 2-59 총휘발량 시험법에 따른다. (<u>현행 Ⅱ. 3. 다.를 변형하여 이동</u>)																				
<u>Ⅲ. 재질별 규격</u>	<u>V. 재질별 규격</u>																				
3. 고무제 가. (생 략) 나. 잔류규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항목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규격(mg/kg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납</td><td><u>고무젓꼭지 이외의</u> 고무제 : 100 이하 고무젓꼭지 : 10 이하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카드뮴</td><td><u>고무젓꼭지 이외의</u> 고무제 : 100 이하 고무젓꼭지 : 10 이하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-머캅토이미다졸린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불검출 (염소를 함유한 고무제에 한함)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3-부타디엔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 이하 (기본중합체 중 1,3-부타디엔의 함유율이 50% 이상인 고무제에 한함)</td></tr> </tbody> </table> 다. 용출규격	항목	규격(mg/kg)	납	<u>고무젓꼭지 이외의</u> 고무제 : 100 이하 고무젓꼭지 : 10 이하	카드뮴	<u>고무젓꼭지 이외의</u> 고무제 : 100 이하 고무젓꼭지 : 10 이하	2-머캅토이미다졸린	불검출 (염소를 함유한 고무제에 한함)	1,3-부타디엔	1 이하 (기본중합체 중 1,3-부타디엔의 함유율이 50% 이상인 고무제에 한함)	3. 고무제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잔류규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항목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규격(mg/kg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납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 이하 (단, 영·유아용 고무제는 10 이하)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카드뮴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 이하 (단, 영·유아용 고무제는 10 이하)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-머캅토이미다졸린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불검출 (염소를 함유한 고무제에 한함)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3-부타디엔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 이하 (기본중합체 중 1,3-부타디엔의 함유율이 50% 이상인 고무제에 한함)</td></tr> </tbody> </table> 다. 용출규격	항목	규격(mg/kg)	납	100 이하 (단, 영·유아용 고무제는 10 이하)	카드뮴	100 이하 (단, 영·유아용 고무제는 10 이하)	2-머캅토이미다졸린	불검출 (염소를 함유한 고무제에 한함)	1,3-부타디엔	1 이하 (기본중합체 중 1,3-부타디엔의 함유율이 50% 이상인 고무제에 한함)
항목	규격(mg/kg)																				
납	<u>고무젓꼭지 이외의</u> 고무제 : 100 이하 고무젓꼭지 : 10 이하																				
카드뮴	<u>고무젓꼭지 이외의</u> 고무제 : 100 이하 고무젓꼭지 : 10 이하																				
2-머캅토이미다졸린	불검출 (염소를 함유한 고무제에 한함)																				
1,3-부타디엔	1 이하 (기본중합체 중 1,3-부타디엔의 함유율이 50% 이상인 고무제에 한함)																				
항목	규격(mg/kg)																				
납	100 이하 (단, 영·유아용 고무제는 10 이하)																				
카드뮴	100 이하 (단, 영·유아용 고무제는 10 이하)																				
2-머캅토이미다졸린	불검출 (염소를 함유한 고무제에 한함)																				
1,3-부타디엔	1 이하 (기본중합체 중 1,3-부타디엔의 함유율이 50% 이상인 고무제에 한함)																				

현행		개정(안)	
항목	규격(mg/L)	항목	규격(mg/L)
납	1 이하	납	1 이하
총용출량	고무젓꼭지 이외의 고무제 : 60 이하 고무젓꼭지 : 40 이하	총용출량	60 이하 (단, 영·유아용 고무제는 40 이하)
페놀	5 이하	페놀	5 이하
포름알데히드	4 이하	포름알데히드	4 이하
아연	고무젓꼭지 이외의 고무제 : 15 이하 고무젓꼭지 : 1 이하	아연	15 이하 (단, 고무젓꼭지 등은 1 이하)
니트로사민류(N-니트로소디메틸아민, N-니트로소디에틸아민, N-니트로소디-n-프로필아민, N-니트로소디-n-부틸아민, N-니트로소피페리딘, N-니트로소피롤리딘, N-니트로소몰폴린의 합)	0.01 mg/kg 이하 (고무젓꼭지에 한함)	니트로사민류(N-니트로소디메틸아민, N-니트로소디에틸아민, N-니트로소디-n-프로필아민, N-니트로소디-n-부틸아민, N-니트로소피페리딘, N-니트로소피롤리딘, N-니트로소몰폴린의 합)	0.01 mg/kg 이하 (영·유아용 고무제에 한함)
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(N-니트로소디메틸아민, N-니트로소디에틸아민, N-니트로소디-n-프로필아민, N-니트로소디-n-부틸아민, N-니트로소피페리딘, N-니트로소피롤리딘, N-니트로소몰폴린의 합)	0.1 mg/kg 이하 (고무젓꼭지에 한함)	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(N-니트로소디메틸아민, N-니트로소디에틸아민, N-니트로소디-n-프로필아민, N-니트로소디-n-부틸아민, N-니트로소피페리딘, N-니트로소피롤리딘, N-니트로소몰폴린의 합)	0.1 mg/kg 이하 (영·유아용 고무제에 한함)

라. (이하 생략)

라. (현행과 같음)